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6
----------	-------

발의연월일 : 2021. 7. 14.

발 의 자 : 황운하·김홍걸·이규민  
양정숙·오영환·유동수  
이성만·이용우·이용호  
강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게 됨.

그러나 일부 하도급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행위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하도급거래상 공사에 관한 채권과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신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② (생략)  <u>&lt;신설&gt;</u></p> <p>③ ~ ⑤ (생략)</p> <p>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신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u></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⑦ <u>제6항</u>-----                      -----                      -----                      -----                      -----.</p> <p>⑧ -----<u>제6항</u>-----                      -----                      -----                      -----                      -----                      -----                      -----.</p>

1. ~ 3. (생략)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  
-----  
-----  
-----  
-----.